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http://www.daedeok.go.kr

제2026-53호
2026. 11. 13.(금)

선	기관(부서)의 장
람	

차 례

공 고(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공고 제2026-1132호) …… 1
- 「대전광역시 대덕구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공고 제2026-1134호) …… 6
-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26-1136호) …… 34

공람									

발행: 대전광역시 대덕구 / 편집: 미디어홍보과(우: 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 608-6607)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6-1132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13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도서관(3개소)의 휴관일을 일원화하여 도서관 인력 및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송촌도서관의 휴관일을 매주 금요일에서 매주 월요일로 개정함(안 제3조 제1항제2호).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도서관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도서관운영과

(전화: 042-608-5887, FAX: 042-608-3863, E-mail: osj810@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운영과 담당자 오수정(전화: 042-608-588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칙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석봉도서관, 안산도서관 및 송촌도서관은 매주 월요일

부 칙

이 규칙은 202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휴관) ① (생 략) 1. (생 략) 2. 석봉도서관 및 안산도서관은 매주 월요일, 송촌도서관은 매주 금요일 ② (생 략)	제3조(휴관)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석봉도서관, 안산도서관 및 송촌도서관은 매주 월요일 ② (현행과 같음)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내　　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6 - 1134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13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일부개정('25. 12. 30.)됨에 따라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과 개정 내용 등을 반영하여 상위 법령과의 체계적 적합성을 확보하고, 변호사 등 보수의 중복 지원 방지 및 민사소송 지원 기준 정비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

나. 적극행정 책임관이 적극행정 보호관을 겸임하도록 하고, 보호관의 사무를

규정하며, “변호사 등”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신설).

다. 기소 이후 형사소송까지 변호사 등의 선임비용 등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민사소송 지원 기준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별표의 지급기준으로 정비하며, 책임보험 우선 청구 및 중복 지원 금액 공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수사기관 등에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정비함(안 제7조).

마.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 사무의 담당 주체를 적극행정 책임관에서 적극행정 보호관으로 정비하고, 지원 신청 서류에 무죄 확정 판결문 사본 및 중복 지원 확인 자료를 추가하며, 지원 이후 중복 수령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바. 책임보험금,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금, 비용보상금 등을 같은 사유로 중복하여 받은 경우 반환 근거를 마련하고, 중복 수령분은 위원회의 반환의무 면제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16조).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기획실

(전화: 042-608-6047, FAX: 042-608-3811, E-mail: dnjs7959@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칙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4항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15조제2항”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5항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제2항”으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제3조 및 제4조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하고, 제2조 및 제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적극행정 보호관)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 보호관은 조례 제2조에 따른 적극행정 책임관이 겸임하며, 적극행정 공무원의 보호 및 법률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신청의 접수 및 사실관계 확인 요청

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여부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상정 및 심의 결과의 통보·집행

3. 변호사·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이하 “변호사 등”이라 한다)의 선임 지원 및 보수 지급 등 집행에 관한 사항

4. 영 제17조제4항 및 이 규칙 제7조에 따른 수사기관 등에 대한 의견서 제출

5. 지원 절차의 안내 및 법률 상담 등의 지원

6. 그 밖에 적극행정 공무원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변호사 등 보수의 지원)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의결 등 요구가 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2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호사 등의 선임비용을 지원한다. 다만, 구청장은 외부 자문변호사를 활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고소·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변호사 등의 선임비용 등을 지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이후에 지원하여야 한다.

1. 고소·고발 등의 경우(기소 이전): 수사과정에서의 변호인 선임비용 등 500만원 이하의 범위 내

2. 고소・고발 등의 경우(기소 이후): 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변호인 선임비용, 소송수행 비용 등 500만원 이하의 범위 내

3.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이하 “소송사무규칙”이라 한다) 별표의 민사사건 지급기준에 따른 금액의 범위 내

③ 제2항의 지원여부 및 지원범위에 관한 결정은 제1호의 경우에는 항고・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로,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심급별로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의 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액 여부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⑤ 적극행정 공무원이 책임보험 등에 따라 보험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 등을 우선 청구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같은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미 지급받았거나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빼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한다.

1. 책임보험 등에 따른 보험금 등

2. 소송사무규칙 등 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원받은 변호사 등의 선임비용 등

3.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에 따른 비용보상 또는 「민사소송법」

에 따른 소송비용 상환으로 받은 금액 중 변호사 등의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제4조(종전의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조례」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회”로 한다.

제6조(종전의 제5조)의 제목 “(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을 “(변호사 등 선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4조”를 “제5조”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을 “변호사 등을 선임한”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를 “변호사 등을 선임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변호사 등”으로 한다.

제7조(종전의 제6조) 중 “위원회”를 “해당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로, “법원”을 “법원 등”으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책임관”을 “보호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증명”을 “증명, 무죄 확정 판결문 사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변호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책임관”을 “보호관”으로 한다.

5의2. 같은 사유로 제5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았거나 지원받은 경우 또는 지급받거나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9조(종전의 제8조)제1항 중 “책임관은 제7조”를 “보호관은 제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책임관”을 “보호관”으로 한다.

제10조(종전의 제9조)제1항 중 “책임관”을 “보호관”으로, “제7조”를 “제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책임관”을 “보호관”으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10조)제1항 중 “책임관은 제9조”를 “보호관은 제10조”로, “제7조”를 “제8조”로, “제9조에 따른”을 “제10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책임관으로부터”를 “보호관으로부터”로, “책임관에게”를 “보호관에게”로 한다.

제12조(종전의 제11조) 중 “책임관은 제10조제2항”을 “보호관은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제13조(종전의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변호사”로, “책임관”을 “보호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각각 “변호사 등”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책임관”을 각각 “보호관”으로 한다.

4의2. 지원을 받은 이후 같은 사유로 제5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거나 지원받은 경우 그 사실 및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14조(종전의 제13조)제1항 본문 중 “제4조제2항에 따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제5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변호사”로 하고, 같은 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책임관”을 각각 “보호관”으로 한

다.

제15조(종전의 제14조)제2호 중 “제5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을 “제6조제1항,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으로, “제13조제1항은”을 “제14조제1항은”으로 한다.

제16조(종전의 제15조)의 제목 “(변호인 보수의 반환)”을 “(변호사 등 보수의 반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14조”를 “제15조”로 하며, 같은 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각각 “변호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③ 적극행정 공무원은 이 규칙에 따라 변호사 등의 보수를 지원받은 후 같은 사유로 제5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거나 지원받은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 중 그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이미 반환한 금액은 제외한다)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민사소송 지원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5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대전광역시 대덕구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1호서식]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신청서

<table>
<tr><td rowspan="3">신청인</td><td>담 당 자</td><td>성명</td><td></td><td>생년월일</td><td></td><td>성별</td><td></td></tr>
<tr><td></td><td>소속</td><td></td><td>직급</td><td colspan="3"></td></tr>
<tr><td>담당업무</td><td colspan="6"></td></tr>
<tr><td colspan="2">신 청 내 용</td><td colspan="6">☐ 변호사 보수 지원(요청 금액 :)
☐ 변호사 선임 지원</td></tr>
<tr><td colspan="2" rowspan="3">징 계 의 결
요 구 개 요</td><td colspan="6">징계의결 요구</td></tr>
<tr><td colspan="3">요구일</td><td colspan="3">관할 징계위원회</td></tr>
<tr><td colspan="3"></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징 계 의 결
요 구 사 유</td><td colspan="6"></td></tr>
<tr><td colspan="2">구비서류</td><td colspan="6">☐ 징계의결 요구서 사본 등 입증서류
☐ 변호사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 중복 지원 확인 자료(해당하는 경우)
☐ 그 밖의 서류</td></tr>
</table>

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환수 및 그 밖의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2호서식]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신청서

<table>
<tr><td rowspan="3">신청인</td><td>담 당 자</td><td>성명</td><td></td><td>생년월일</td><td></td><td>성별</td><td></td></tr>
<tr><td></td><td>소속</td><td colspan="2"></td><td>직급</td><td colspan="2"></td></tr>
<tr><td></td><td>담당업무</td><td colspan="3"></td><td>재직 여부</td><td colspan="2">☐ 재직 ☐ 퇴직</td></tr>
<tr><td colspan="2">신 청 내 용</td><td colspan="6">☐ 고소·고발 등(기소 이전)
☐ 고소·고발 등(기소 이후, 무죄 확정)
☐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td></tr>
<tr><td colspan="2"></td><td colspan="6">☐ 변호사 등 보수 지원(요청 금액 : 원)
☐ 변호사 등 선임(추천) 지원
☐ 수사기관 또는 법원 등에 대한 의견서 제출 요청</td></tr>
<tr><td colspan="2" rowspan="5">사 건 개 요</td><td colspan="5">사건번호</td><td colspan="2">사건명</td></tr>
<tr><td colspan="7">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td></tr>
<tr><td colspan="7">고소·고발인 또는 원고</td></tr>
<tr><td colspan="5">진행 단계 ☐ 수사 ☐ 1심 ☐ 2심 ☐ 3심</td><td colspan="2">무죄 확정일</td></tr>
<tr><td colspan="7">변호사 등 선임 여부 ☐ 선임(성명: , 선임일:) ☐ 미선임</td></tr>
<tr><td colspan="2">사건 내용 및 적극행정 관련성</td><td colspan="6">사건의 경위, 해당 업무와 적극행정 추진 내용</td></tr>
<tr><td colspan="2" rowspan="4">중복지원 확인</td><td colspan="3">구분</td><td colspan="2">해당 여부</td><td>금액(원)</td></tr>
<tr><td colspan="3">책임보험 등에 따른 보험금 등</td><td colspan="2">☐ 해당 없음
☐ 청구 중
☐ 지급받음</td><td></td></tr>
<tr><td colspan="3">「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등 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른 지원</td><td colspan="2">☐ 해당 없음
☐ 신청 중
☐ 지원받음</td><td></td></tr>
<tr><td colspan="3">「형사소송법」에 따른 비용보상 또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 상환</td><td colspan="2">☐ 해당 없음
☐ 청구 중
☐ 지급받음</td><td></td></tr>
<tr><td colspan="2">구비서류</td><td colspan="6">☐ 수사개시 통보, 무죄 확정 판결문 사본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 변호사 등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이미 선임한 경우)
☐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 중복 지원 확인 자료(보험금 청구·지급 내역 등)(해당하는 경우)
☐ 그 밖의 서류</td></tr>
</table>

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환수 및 그 밖의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또한 지원을 받은 이후 같은 사유로 보험금 등,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금 또는 비용보상금 등을 지급받거나 지원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알리고 중복하여 지원받은 부분을 즉시 반환할 것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4항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15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5항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제2항----------.
<신 설>	제2조(적극행정 보호관)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 보호관은 조례 제2조에 따른 적극행정 책임관이 겸임하며, 적극행정 공무원의 보호 및 법률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신청의 접수 및 사실관계 확인 요청 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여부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상정 및 심의결과의 통보・집행 3. 변호사・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이하 “변호사 등”이라 한

	다)의 선임 지원 및 보수 지급 등 집행에 관한 사항 4. 영 제17조제4항 및 이 규칙 제7조에 따른 수사기관 등에 대한 의견서 제출 5. 지원 절차의 안내 및 법률 상담 등의 지원 6. 그 밖에 적극행정 공무원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2조 (생 략)	제3조 (현행 제2조와 같음)
제3조(적극행정위원회)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조례」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의결한다.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위원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조(변호사 등 보수의 지원)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의결 등 요구가 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2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호사 등의 선임비용을 지원한다. 다만, 구청장은 외부

	자문변호사를 활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고소·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변호사 등의 선임비용 등을 지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이후에 지원하여야 한다. 1. 고소·고발 등의 경우(기소 이전): 수사과정에서의 변호인 선임비용 등 500만원 이하의 범위 내 2. 고소·고발 등의 경우(기소 이후): 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변호인 선임비용, 소송수행 비용 등 500만원 이하의 범위 내 3.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이하 “소송사무규칙”이라 한다) 별표의 민사사건 지급기준에 따른 금액의 범위 내

	③ 제2항의 지원여부 및 지원범위에 관한 결정은 제1호의 경우에는 항고·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로,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심급별로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의 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액 여부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⑤ 적극행정 공무원이 책임보험 등에 따라 보험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 등을 우선 청구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같은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미 지급받았거나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빼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한다. 1. 책임보험 등에 따른 보험금 등 2. 소송사무규칙 등 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원받은 변호사 등의 선임비용 등

	3.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에 따른 비용보상 또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 상환으로 받은 금액 중 변호사 등의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제4조(변호인·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의결 등 요구가 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2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선임비용을 지원한다. 다만, 구청장은 외부 자문변호사를 활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고소·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한다.	<삭 제>

1. 고소·고발 등의 경우: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 내 2.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른 보수액의 범위 내 ③ 제2항의 지원여부 및 지원범위에 관한 결정은 제1호의 경우에는 항고·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로, 제2호의 경우에는 심급별로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의 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액 여부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5조(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 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적극행정 공무원은 이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	제6조(변호사 등 선임) ① 제5조---------- ---------- 변호사 등을 선임한 ---------- ---------- ---------- 변호사 등을 선임하여야 ----------.

다.	
② 적극행정 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구청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	② ---------- 변호사 등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6조(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구청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 해당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 --------- 법원 등----------.
제7조(지원 신청) 이 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신청) ---------- 보호관----------.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3. ---------- 증명, 무죄 확정 판결문 사본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5. 변호사 등----------
<신 설>	5의2. 같은 사유로 제5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았거나 지원받은 경우 또는 지급받거나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6. 그 밖에 적극행정 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6. ---------- 보호관----------
제8조(지원 절차 안내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7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절차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고지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 절차 안내 등) ① ---------- 보호관은 제8조----------.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지원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제4호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 보호관----------.
제9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징계절차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	제10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① ------ 보호관----------

해 제7조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즉시 감사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하 “감사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알려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 제8조---------- ---------- ---------- ---------- ---------- ---------- -------.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감사부서의 장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 여부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 ---------- ---------- ---------- 보호관--------- ---------- --------. ---------- ---------- ----------.
제10조(위원회 상정·심의)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9조에 따라 감사부서의 장 등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통보받은 즉시 제7조에 따른 신청 서류 및 제9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여부를 상정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 상정·심의) ① ---- ---- 보호관은 제10조------- ---------- ---------- 제8조 ---------- 제10조에 따른 ---------- ---------- ---------- ---------- ---------- ----------.
② 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지원	② ---------- ----------

범위 등을 심의·의결하여야 하며, 적극행정 책임관으로부터 심의·의결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 보호관으로부터 --- ---------- ---------- 보호관에게 ----------. - ---------- ---------- ---------- ----------.
제11조(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그 집행을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제12조(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 ------ 보호관은 제11조제2항- ---------- ---------- ----------.
제12조(자료의 제출) ① 적극행정 공무원이 이 규칙에 따라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보수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 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의 제출) ① ------- ---------- 변호사 ---------- ---------- ---------- ---------- 보호관----------.
1. 지원 신청 이후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임계약서	1. ---------- 변호사 등 --- ---------- ----------

2.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변호사 등---------- ---------- ---------- ---------- -------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지원을 받은 이후 같은 사유로 제5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거나 지원받은 경우 그 사실 및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 그 밖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과 관련하여 적극행정 책임관이 요청한 서류	5. ---------- ---------- ---------- 보호관----------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② ------ 보호관---------- ---------- ---------- ---------- ----------.
제13조(보고) ①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4조제2항에 따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보수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매 3개월마다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제14조(보고) ① ---------- -- 제5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변호사 ---------- ---------- ------ 보호관---------- ---------- --. ----------

적극행정 책임관이 보고시기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 보호관----------.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② ------ 보호관----------.
제14조(지원의 취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지원의 취소)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5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다만,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제13조제1항은 제외한다)	2. ---------- 제6조제1항,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제14조제1항은 -------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제15조(변호인 보수의 반환) ① 제14조에 따라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변호사 등 보수의 반환) ① 제15조---------- 변호사 등----------.
②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급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	② ---------- 변호사 등----------

가 실제로 지출한 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
<신 설>	③ 적극행정 공무원은 이 규칙에 따라 변호사 등의 보수를 지원받은 후 같은 사유로 제5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거나 지원받은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 중 그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이미 반환한 금액은 제외한다)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④ 위원회는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환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반환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관계법령 1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시행 2025. 12. 30.] [대통령령 제35996호, 2025. 12. 30., 일부개정]

제4조(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시·도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임전결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주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 이해관계의 충돌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과 중요성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3. 6. 27.>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5. 12. 30.>

제6조(전담부서의 지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는 적극행정 책임관과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5. 12. 3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7조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적극행정 책임관이 적극행정 보호관을 겸임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30.>

제17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 관한 재판이 확정되어 구상권 행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수행 비용을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이후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7., 2025. 12. 30.>

1. 징계의결등의 요구를 받아 제16조에 따른 징계등 면제 기준 충족 여부 등에 대해 소명이 필요한 경우
2.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형사 고소·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경우
3.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해 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한 경우(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같다)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하여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7., 2025. 12. 30.>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수사기관 등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0.>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및 의견 제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5. 12. 30.>

⑥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을 가진 사람(이하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라 한다)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징계의결등 요구서의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보내는 경우로서 징계의결등의 대상 행위가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징계 감경 또는 면제를 건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해당 징계등 혐의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7., 2025. 12. 30.>

관계법령 2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정) 2020.02.21 조례 제1434호
(일부개정) 2022.09.30 조례 제1609호
(전부개정) 2023.12.08 조례 제170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기본법」 제4조,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담부서의 지정)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하고, 그 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6조(적극행정위원회) 법 제75조의2제2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적극행정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75조의2제2항 및 영 제10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퇴직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해 영 제17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법률전문가의 도움이나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내　　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6 - 1136호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8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부과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13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제 목:「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부과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관련근거
 가. 과태료 부과:「폐기물관리법」제8조, 같은 법 제68조
 나. 공시송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기 간: 2026. 11. 13. ~ 11. 30. (17일간)
4. 공고대상: 별첨
5. 공시송달 내용
 가.「폐기물관리법」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및 부과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대덕구 자원농생명과(☎042-608-6834)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사전통지서**의 경우, 2026. 12. 15.까지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 과태료 부과금액이 부과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내 과태료 자진 납부 시 과태료 금액의 20% 감경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부과통지서**의 경우, 납부기한(2026. 12. 31.)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의 가산금이 부과 및 이후 매월 1.2%의 중가산금(최대 60개월)이 부과되며, 납기 내 미납 시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재산압류 등 불이익이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덕구 자원농생명과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으며, 접수된 이의제기서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아울러 위 기간이 도래하면 사전통지서, 부과통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문 의 처: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원농생명과(☎042-608-6834)

[별첨1]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

성 명	주 소	위반내용	부과금액(원) (감경액)	반송사유
김*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로 16, 110*동 130*호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500,000 (400,000)	폐문부재

[별첨2]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부과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

성 명	주 소	위반내용	부과금액(원)	반송사유
유*완	대전광역시 서구 계백로1158번길 113, 20*동 90*호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50,000	폐문부재
조*주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북로70번길 23, *동 30*호	담배꽁초 불법투기	50,000	폐문부재
유*형	대전광역시 유성구 송강로42번길 61, 51*동 50*호	담배꽁초 불법투기	50,000	폐문부재
한*수	대전광역시 동구 매봉로 7-1, *동 40*호	담배꽁초 불법투기	50,000	폐문부재
김*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로 16, 110*동 130*호	담배꽁초 불법투기	50,000	폐문부재